

【 8 】 양주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제출년월일 2003. 12.

제출자 양주시장

□ 수경이유

양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와 양주군체육회진흥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되는 양주시체육진흥조례 안에 대하여 지방체육진흥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정코자 함.

□ 수경주요골자

- 가. 양주시체육진흥위원회 위원증 시 의회의장이 추천한 의회의원 2인을 3인으로 수정(안 제4조제3항2호)
- 나. 의회의 승인을 받은 기금운용계획은 당해연도 초에 지원 대상 기관이나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자체 자금운용계획 수립에 고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 (안 제14조제4항)
- 라.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고 이자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양주시체육회의 경상운영비로는 당해연도 사업비의 2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이 10억원미만시는 이자수익금의 20%범위내에서, 10억원이상시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이자수익금의 10%이내에서 경상운영비로 지원 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안 제15조제2항)

소관부서		문화체육담당관
입 안 자	실과장 담당 실무자	곽 흥 길 조 전 제 안 태 일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체육진흥조례안에대한수정안

양주시체육진흥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항제2호 중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2인”을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의회의원 3인”으로 한다.

안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의회의 승인을 받은 기금운용계획은 당해연도 초에 지원 대상기관이나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자체 자금운용계획 수립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제15조 중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를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고 이자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양주시체육회의 경상운영비로는 당해 연도 사업비의 2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체육진흥기금조성 액이 10억원미만시는 이자수익금의 20% 범위내에서, 10억원이상시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이자수익금의 10%이내에서 경상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

안 부칙제2항중 “이 조례 시행당시”를 “종전”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4조(구성) ①~② 생략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연직 : 기획감사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2. 위촉직 : 시단위기관 및 단체의 장, <u>시 의회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2인</u>, 기타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p>④ 생략</p> <p>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③ 생략 <신설></p>	<p>제4조(구성) ①~②(원안과 같음)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연직 : 기획감사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2. 위촉직 : 시단위기관 및 단체의 장, <u>시 의회의장이 추천한 의회의원 3인</u>, 기타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p>④(원안과 같음)</p> <p>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③ (원안과 같음) ④ <u>의회의 승인을 받은 기금운용계획은 당해연도 초에 지원 대상기관이나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자체 자금운용계획 수립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15조(기금의 사용) <u>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생략 <p><신설></p>	<p>제15조(기금의 사용) ① <u>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원안과 같음) <p>② <u>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고 이자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양주시체육회의 경상운영비로는 당해연도 사업비의 2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체육진흥기금조성액이 10억 원미만시는 이자수익금의 20% 범위내에서, 10억 원이상시에는 초과분에</u></p>

<p>부 칙</p> <p>②(경과조치) <u>이 조례 시행 당시 양주군체육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u></p>	<p>부 칙</p> <p>②(경과조치) <u>종전 양주군체육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u></p>
--	---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체육진흥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진흥을 통하여 주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도모하여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 · 야외활동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양주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2장 양주시체육진흥위원회

제3조(설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양주시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 기획감사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2. 위촉직 : 시단위기관 및 단체의 장, 시 의회의장이 추천한 의회의원 3인, 기타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당연직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11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제1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목표액
은 20억원으로 한다. 다만,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타 전입금

② 기금의 조성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으로 한다.

제13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의 기금 사용계획

3.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시장은 제1항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의회의 승인을 받은 기금운용계획은 당해연도 초에 지원 대상기관이
나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자체 자금운용계획 수립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시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
2.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
3. 시 체육회 및 가맹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4.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고 이자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양주시체육회의 경상운영비로는 당해연도 사업비의 2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이 10억 미만시는 이자수익금의 20% 범위내에서, 10억 원이상시에 ~~총과분에 대하여~~ 이자수익금의 10%이내에서 경상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금관리 담당의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체육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체육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심의를 거쳐 다음회 계년도 6월말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양주시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종전 양주군체육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